



관계부처 합동

보 도 자 료

보도일시		2018. 9. 6 (목) 석간 <인터넷 2018. 9. 6(목) 11:00 이후>		배포일시	2018. 9. 5(수) 14:00 (총 4매, 첨부 별도)
담당자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과장	김 희 순		044-201-2239
		사무관	석 선 영		044-201-2240
	국토교통부 BMW 리콜전담 TF	과장	이 상 일		044-201-4987
		서기관	양 종 호		044-201-4988
		사무관	정 송 이		044-201-4992

「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」 발표

- 정부는 2018년 9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‘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’를 개최하여,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 - 차량대수 증가(2,300만대), 첨단안전 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.
 - * ('12) 20.6만 → ('14) 87만 → ('16) 62만 → ('17) 198만대 → ('18.상) 206만대
 - 특히 금년들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되었으며, 향후 'BMW 사태' 재발방지를 위하여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.
-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,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역량 강화도 포함하였다.

① 첫째,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.

- 제작결함 은폐·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(매출액의 3/100)하고, 능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/100에서 3/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.

* 현재는 벌칙(10년 이하의 징역, 1억 이하의 벌금)만 적용 가능

- 정부가 제작결합조사에 착수하면, 제작사는 결합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, 제작사에 대해 결합관련 차량·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.
-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합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,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.

<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(안) >

구분	부실제출	지연제출	미제출
과태료(만원)	건당 500	(1차) 300 → (2차) 500 → (3차) 1,000	건당 1,000

- 또한,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(시정방법, 시정대수 등)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결합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.

② 둘째, 선제적 결합조사 체계를 강화한다.

- 국토부(안전)와 환경부(배출가스)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,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하였다
 - 국토부와 소방·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, 화재, 중대교통사고(결합의심 사망사고)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.
-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·부품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, 체계적 결합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
 - * 소비자 신고, 제작사 무상점검·기술분석 자료 등 연간 약 1~2천만건 수집정보 등
- 특히,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합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.

* (예시) 전체 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(BMW 사례 참조)

③ 셋째,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확보한다.

-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생명·신체,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“징벌적 손해배상 제도”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.
-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.
-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,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(우편·문자 등)하고,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
- * (예시) (1차) 6개월 내 시정률 60%, (2차) 9개월 70%, (3차) 12개월 80%
- 아울러,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④ 넷째,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.

- 조기결함징후 파악,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.
 - 특히 전문인력·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·부품구매, 장비와 시스템 구축,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 - * 자료분석(기술분석 1천2백만건), 현장조사(화재 5천여건, 중대교통사고 4천건, 소비자 신고 6.4천건), 사후관리(2백만대 리콜) 뿐만 아니라 제작결함조사, 적정성조사, 리콜통지, 시스템 운영 등 인력 증원 필요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, 국회,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

마련했다”면서

- “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,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

 공공누리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BMW리콜대응 전담TF 양종호 서기관(☎044-201-4988), 정송이 사무관(☎044-201-49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-